

■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[별표 6] <개정 2022. 7. 11.>

석탄가공업의 등록신청등에 대한 수수료(제26조관련)

(단위 : 원)

항 목	수 수 료
1.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가공업의 등록신청	20,000
2.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가공업의 등록사항 및 변경신고	2,000
3. 삭제 <1989. 8. 21.>	
4.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가공업자의 지위승계신고	1,000
5. 삭제 <2022. 7. 11.>	
6. 법 제22조 후단의 규정에 의한 휴업한 석탄가공업의 재개신고	1,000